



통보

본 통보문은 10.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

<p>1. <b>통보국가:</b> <u>유럽연합</u></p> <p>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제 3.2 조 및 제 7.2 조):</p>
<p>2. <b>담당기관:</b></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TBT 질의처, 팩스: +(32) 2 299 80 43, 이메일: <a href="mailto:grow-eu-tbt@ec.europa.eu">grow-eu-tbt@ec.europa.eu</a> 웹사이트: <a href="https://technical-barriers-trade.ec.europa.eu/en/home">https://technical-barriers-trade.ec.europa.eu/en/home</a></p>
<p>3. <b>근거 조항</b> 제 2.9.2 조 [X], 제 2.10.1 조 [ ], 제 5.6.2 조 [X], 제 5.7.1 조 [ ], 제 3.2 조 [ ], 제 7.2 조 [ ], 기타:</p>
<p>4. <b>해당 제품(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b> 승용차 및 밴(M1 및 N1 분류의 자동차).  HS 8703 및 HS 8704  ICS 43.020</p>
<p>5. <b>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제목, 페이지 수, 접근 방법):</b> 차량용 배터리 내구성, 저온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 및 전동화 차량 시스템 출력과 관련한 특정 방법, 요건 및 시험과 행정 요건에 관하여 시행 규정 (EU) 2025/1706 을 개정하는 위원회 시행 규정 (6 페이지, 영어), (22 페이지, 영어)</p> <p><b>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또는 연락처 링크:</b></p> <p><a href="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6/TBT/EEC/26_02765_00_e.pdf">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6/TBT/EEC/26_02765_00_e.pdf</a> <a href="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6/TBT/EEC/26_02765_01_e.pdf">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6/TBT/EEC/26_02765_01_e.pdf</a></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TBT 질의처 팩스: + (32) 2 299 80 43 이메일: <a href="mailto:grow-eu-tbt@ec.europa.eu">grow-eu-tbt@ec.europa.eu</a>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a href="https://technical-barriers-trade.ec.europa.eu/en/home">https://technical-barriers-trade.ec.europa.eu/en/home</a></p>

6. **내용:** 본 규정안은 규정 (EU) 2024/1257(Euro 7)에 따라 차량용 배터리 내구성, 저온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 및 시스템 출력 결정에 대한 시행 조치를 규정한다. UNECE의 최신 세계 조화 표준, 특히 UN 규정 제 154 호(04 차 개정)와 UN 규정 제 83 호(09 차 개정)를 반영하여 M1 및 N1 분류 차량에 대한 견고하고 실제 도로 대표성을 갖춘 시험을 보장한다.

본 규정안은 차량용 배터리의 수명주기 내구성 시험, 저온에서의 전기 주행거리 검증, 다중 모터 전기차의 시스템 출력 결정 등 형식승인을 위한 특정 방법 및 시험 요건을 도입한다. 이러한 조치는 무공해 모빌리티를 진전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배터리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최근의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보다 엄격한 배출 관리의 시행이 가능해졌다. Euro 7은 제조업체가 이러한 기술을 채택하도록 보장하여 혁신을 추진하고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차량을 육성한다. 적시 채택은 업계에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전기차 투자를 보호하며,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기 사망 및 만성 질환을 줄이고, 의료비용을 낮추며, 보다 엄격한 형식승인 요건을 통하여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2026년 11월 신규 차종에 Euro 7이 적용되기 전 업계와 당국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여름까지의 원활한 채택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 필요성 및 짧은 채택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로 단축되었다.

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본 규정안의 목적은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257(Euro 7)에 따라 경량 차량에 대한 EU 차량 배출 형식승인 법령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데 있다.

위에 기술된 확립된 이익을 고려할 때, Euro 7 규정의 적시 시행은 시급성 및 공동 입법자들이 설정한 시행규칙 채택을 위한 의무적이고 매우 짧은 마감기한을 정당화한다.; 품질요건; 국제표준과의 조화

8. **관련 문서:**

- 자동차 및 엔진과 해당 차량용 시스템, 구성요소 및 별도 기술 단위의 배출 및 배터리 내구성에 관한 형식승인에 관한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257 (Euro 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257](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257))
- M1 및 N1 분류 차량의 배기 및 증발 배출 형식승인과 관련한 규정 (EU) 2024/1257의 적용을 위한 규칙, 절차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시행 규정 (EU) 2020/683을 개정하는 2025년 7월 25일 위원회 시행 규정 (EU) 2025/17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5R1706&qid=1776028575506>)

9. **채택 예정일:** 2026년 7월

**시행 예정일:** EU 관보 공표일로부터 20일

10. **의견 제공**

**의견 마감일:** 2026-06-27 (통보일로부터 30일)

**통보일로부터 60일 [ ]**

**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TBT 질의처,  
팩스: + (32) 2 299 80 43,  
이메일: [grow-eu-tbt@ec.europa.eu](mailto:grow-eu-tbt@ec.europa.eu)